

연구윤리지침

2024년 2월(version 1.1)



상지대학교

교무연구처 교무연구팀

목 차

I. 배 경	01
1. 연구와 연구윤리	
2. 연구윤리 관련 법률과 교내 연구윤리 지원 시스템	
1) 「학술진흥법」과 연구윤리	
2)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과 연구윤리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연구윤리	
4) 교내 연구윤리 관련 지원 시스템	
3. 연구부정행위의 정의와 범위	
4. 연구윤리 관련 연구자의 역할	
1)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2)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	
II. 연구윤리	17
1. 연구윤리와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	
1) 관련 근거	
2) 처리 절차	
3) 주요 내용	
2. 연구윤리 인식 확산을 위한 연구윤리 교육	
1) 교내 연구윤리 교육	
2) 교외 연구윤리 교육	
3. 연구성실수행 관리 및 데이터 관리의 위조 및 변조 방지를 위한 연구노트	
1) 관련 근거	
2) 연구노트 작성 방식	
III. 생명윤리	27
1) 관련 근거	
2) 처리 절차	
3) 주요 내용	
IV. 동물실험윤리	29
1) 관련 근거	
2) 처리 절차	
3) 주요 내용	

1. 배경

연구윤리(research ethics)는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하면서 지켜야 할 원칙이나 행동양식”을 말한다. 즉, 연구 계획 단계부터 논문 출판까지 전 과정에서 모든 연구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행동양식이자 윤리적인 사항으로 연구의 주제 선정과 기획, 생명체 연구의 윤리, 연구대상 선정과 수집, 실험의 수행, 연구노트 작성, 자료수집과 정리 등 모든 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적인 내용을 포함한다.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연구 활동은 다음의 3가지 유형이 있다. 먼저 바람직한 연구 활동인데, 연구자가 연구과정에서 알고 지켜야 할 핵심가치를 준수함으로써 책임 있는 연구 수행(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 RCR)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은 바람직하지 못한 연구 활동인데, 연구자가 의도를 한 것이든, 몰랐거나 실수로 한 것이든 연구자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연구활동을 실천하지 못하였거나 위반한 것으로 이것에는 연구부정행위(research misconduct)와 의심스러운 연구 수행(questionable research practices, QRP)이 있다.

1. 연구와 연구윤리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마다 사용되는 연구방법이 다르며 따라서 모든 과학적 탐구에 적용되는 하나의 보편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책임 있는 연구수행을 위해 연구자들이 지켜야 할 원칙은 존재한다.

미국 연구진실성관리국(office of research integrity, ORI)에서는 연구윤리의 출발점이자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정직성(honesty), 정확성(accuracy), 효율성(efficiency) 및 객관성(objectivity)을 언급하였다.

정직성이란, 정보를 정직하게 전달하고 윤리원칙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확성이란, 연구 결과를 정확히 보고하고 오류를 피하는데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한다.

효율성이란, 자원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낭비가 없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객관성이란,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부당한 편견을 피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윤리학자인 레스닉(D.B.Resnik)은 과학 활동에서 요구되는 윤리적 행위의 원칙으로 다음의 12가지를 이야기 하고 있다(과학의 윤리(한국연구재단 학술명저번역총서 서양편 381), 데이비드 레스닉 지음, 양재섭, 구미정 옮김, 나남, 2016).

1. 정직성(honesty)

- 과학자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조작, 위조하거나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2. 신중성(carefulness)

- 과학자는 연구에 있어 오류를 피해야 하며 특히 결과 부분의 제시에 있어서 더욱 주의해야 한다.

3. 개방성(openness)

- 과학자는 데이터, 결과, 방법, 아이디어, 기법, 도구 등을 공유해야 한다.

4. 자유(freedom)

- 과학자는 어떤 문제나 가설에 대한 연구를 자유롭게 수행해야 한다.

5. 공로(credit)

- 공로는 마땅히 주어져야 할 사람에게 주어져야 한다.

6. 교육(education)

- 과학자는 예비 과학자들을 교육시키고 그들이 더 나은 과학을 수행할 방법을 배우도록 도와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대중에게까지 교육할 의무가 있다.

7.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

- 과학자는 사회에 대해서 해를 끼치는 것을 피하고 사회적 이익을 창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8. 합법성(legality)

- 연구의 과정에서 과학자는 자신의 작업에 적용되는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9. 기회균등(Opportunity)

- 어떤 과학자라도 과학적 자원을 사용하거나 과학적 직업에서 승진할 기회가 부당하게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 과학자는 인종, 성별, 국적, 연령 등과 같이 과학적 능력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특징에 기초하여 동료를 차별해서는 안된다.

10. 상호존중(mutual respect)

- 과학자는 서로를 존중함으로써 협력과 신뢰의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11. 효율성(efficiency)

- 과학자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한 논문으로 보고될 수 있는 연구를 여러 편의 논문으로 쪼개어 출간하거나 동일한 결과를 단지 미세한 수정을 통해 여러 편의 상이한 논문들에 이용하는 일을 해서는 아니 된다.

12. 실험대상에 대한 존중(respect for subjects)

- 과학자는 인간을 실험대상으로 사용할 때 인권 또는 존엄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또한 동물을 실험대상으로 사용할 때에도 적절한 존엄성과 조심성을 가져야 한다.

연구과정에서 진실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연구자가 사회와 다른 연구자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도덕적 책무이므로 연구 진실성 확보를 위해서 연구자는 연구수행과정에서 기본적인 연구윤리의 원칙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연구윤리는 연구자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연구자와 연구대상자를 함께 보호하는 장치이다. 연구윤리를 준수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학문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므로 연구자는 연구윤리를 준수하여 연구 진실성 확보를 준수하며 연구수행을 해야 한다.

연구 단계마다 연구의 진실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들이 존재한다. 연구자는 각 연구단계마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연구 과정	연구단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사항
연구수행	연구계획	-통계학자 상담 및 문헌고찰 등을 통한 치밀한 실험설계 -인간과 동물이 대상이 되는 경우 IRB 또는 IACUC 승인
	실험 및 데이터의 분석과 선택	-데이터 선별의 논리와 기준의 설정 -정확한 방법(기기와 프로그램)에 의한 데이터 확보 -편향되지 않은 데이터의 선별 -정확하고 유의한 통계처리 -정확한 데이터 기록과 보존
	데이터 보존과 공유	-연구노트의 보존 -데이터의 위조와 변조 방지 -데이터 수집, 활용과 공유에 대한 적절한 책임과 권리 행사
연구결과 발표	표절방지	-올바른 인용 -타인의 아이디어 및 저작권 보호
	중복게재 주의	-연구물의 중복 투고 및 게재 혹은 이중 출판 금지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예방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학술적, 기술적 기여도에 따라 결정 -연구 기여도: 연구계획, 수행, 결과 분석 및 연구결과 작성

2. 연구윤리 관련 법률과 교내 연구윤리 지원 시스템

1) 「학술진흥법」과 연구윤리

교육부「학술진흥법」은 ‘학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술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지원·관리하고 학술 기반을 강화하며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새로운 지식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 제15조에서 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제15조(연구윤리의 확보)

①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대학 등은 다음 각 호의 연구부정행위(이하“연구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2. 그 밖에 연구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②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을 방해하는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학술 연구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하“연구윤리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는 등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등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대학등은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의 방지 및 검증을 위한 자체 연구윤리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제2항에 따른 연구윤리지침의 작성, 제3항에 따른 정부의 지원 및 제4항에 따른 대학등의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학술진흥법 시행령 내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제15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유사한 학술적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하여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등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2. 자신이나 다른 연구자·대학등에 대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이하 “연구부정행위”라 한다)의 검증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危害)를 가하는 행위
3. 그 밖에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연구윤리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2)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과 연구윤리

학술진흥법에 근거한 교육부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은 ‘연구자 및 대학 등의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은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대학등의 역할과 책임, 연구윤리 교육, 연구윤리 규정 마련,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판단 및 검증, 제보자 보호,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제5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10.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내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제11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 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연구윤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체계를 혁신하고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가혁신 역량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 제7조에서 연구자의 책임과 역할로 연구윤리를 준수하면서 연구개발 활동을 해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내 연구윤리 범위

제56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① 법 제3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 제보자에 대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증·조치 및 조사의 공정성·객관성을 해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 가.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 나. 위협·협박
2. 연구개발비 사용의 건전성을 해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 가. 제24조제3항에 따른 증명자료의 위조·변조
 - 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용내역의 거짓 보고
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해당하는 행위

②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정행위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개발자료 및 연구개발성과를 거짓으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 연구시설·장비, 연구재료 및 연구개발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개발자료 및 연구개발성과를 임의로 변형·추가·삭제함으로써 연구개발 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적절한 출처의 표시 없이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에 사용하는 행위
4.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제58조(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 관련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진실성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및 관리체계
2. 학술지 투고, 학회 참석 등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3. 이해 충돌 예방 및 관리

- 4. 인간 대상 연구 및 동물 실험에 관한 윤리
- 5. 연구자의 권익보호 등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 6. 그 밖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아래 삭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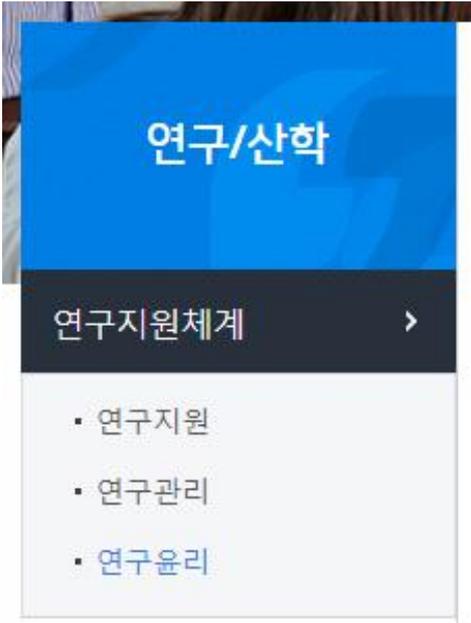
4) 교내 연구윤리 관련 지원 시스템

(1) 연구윤리 관련 법률과 교내 연구윤리 심의위원회

	해당법률	위원회
연구 진실성 확보	학술진흥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윤리위원회
생명윤리 확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동물보호법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2) 교내 연구윤리 관련 지원 시스템

- 연구윤리 홈페이지 (https://www.sangji.ac.kr/kor/sub05_01_03_01.do)



■ 연구윤리위원회 (https://www.sangji.ac.kr/kor/sub05_01_03_03.do)

연구윤리위원회



🏠 > 연구/산학 > 연구지원체계 > 연구윤리 > 연구윤리위원회

연구진실성(연구윤리)

연구의 윤리와 진실성을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진실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목적으로 합니다.

연구부정행위 유형

유형	내용
위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변조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표절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조사 방해 행위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기타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https://www.sangji.ac.kr/kor/sub05_01_03_01.do)

생명윤리심의위원회

🏠 > 연구/산학 > 연구지원체계 > 연구윤리 >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생명윤리심의위원회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생명윤리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데 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대상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합니다.

생명윤리의 기본원칙

-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구대상자들의 인권과 복지는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연구대상자들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하며, 연구대상자들의 자발적인 동의는 충분한 정보에 근거하여야 한다.
- 연구대상자들의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하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당사자가 동의하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 연구대상자들의 안전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위험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 취약한 환경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은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
- 생명윤리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제 협력을 모색하여야 하고, 보편적인 국제기준을 수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연구

□ 인간대상 연구

- 정의 :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 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 심의내용 : 개인정보, 연구대상자 보호대책 등

□ 인체유래물 연구

- 정의 : 인체유래물(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 체 구성물 또는 이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을 직접 조사분석하는 연구
- 심의내용 : 인간대상자 연구 심의내용 외 인체유래물 처리, 제공 및 폐기 등
- 상기 이외에 윤리적·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로서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https://www.sangji.ac.kr/kor/sub05_01_03_02.do)

동물실험윤리위원회



🏠 > 연구/산학 > 연구지원체계 > 연구윤리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생명윤리심의위원회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동물실험윤리

동물실험이란 교육·시험·연구 및 생물학적 제제(製劑)의 생산 등 과학적 목적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 또는 그 과학적 절차를 말하며, 이렇게 행해지는 동물실험에 있어 윤리성을 담보하고 신뢰성을 높이는 일련의 체계적인 활동을 말합니다.

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1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 2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3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 4 동물이 고통·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 5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연구부정행위의 정의와 범위

◆ 연구부정행위란 연구수행 과정에서 속임수, 자기기만 등 연구공동체 및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는 학문적·과학적 위반행위, 흔히 FFP라 불리는 위조(Fabrication), 변조(Falsification), 표절(Plagiarism)이 대표적이며, 우리나라에서는 부당한 저자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등을 포함하고 있다.

◆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설명하는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어휘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 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②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③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④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또한, 타인의 발표하였거나 출간한 연구 내용 중 핵심 개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표시 없이 본인의 연구개념인 것처럼 발표하는 경우(그래프, 도표, 그림, 사진 등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가 다른 경우도 포함함)나 원 저작물의 출처를 밝혔더라도 인용된 저작물이 새로운 저작물의 주(主)가 되는 경우,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창작물 또는 아이디어를 인용표시 없이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등도 표절에 포함된다.

- (4) 부당한 저자 표시'라 함은 연구결과 혹은 내용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음에 위배되는 경우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 ① 연구를 계획하거나, 자료의 수집·분석 및 해석에 상당한 참여를 한 사람, 학문적으로 주요한 내용을 비판적으로 수정한 사람,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한 사람만이 저자가 될 수 있으며 연구비 수주, 자료 수집, 연구 관리만을 담당한 사람은 저자가 될 수 없다.
 - ② 저자 표시 순서는 연구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에 따라 결정하되, 참여한 저자 간의 합의에 기초하여야 한다.
 - ③ 저자의 소속은 실험 및 자료 분석 등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교신저자는 투고, 수정, 출판 등 논문 게재의 전 과정을 책임지며, 공동 저자들에게 이를 알려서 승인 받아야 한다.
 - 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하거나 발표해서는 아니 된다.
-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 ① 중복게재 여부의 판정은 통상적으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하며, 학위논문, 연구 결과보고서 및 학술대회 발표논문의 경우는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 ② 논문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들을 모아서 저서로 출간하는 경우는 중복 게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적절한 인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 ③ 학술지에 게재하였던 내용을 대중서, 교양잡지 등으로 발간하는 것은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④ 짧은 서간 형태의 논문(letter, communication)을 출판한 후에 연구 결과 및 해석 또는 자세한 연구 수행 과정의 정보 등이 추가되는 긴 논문(full paper)을 다시 출간하는 경우는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적절한 인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 ⑤ 동일한 연구 결과를 다른 언어로 출판할 때 원 논문을 적절히 인용하고 해당

학술지의 사전 승낙을 받는 경우는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 (7) 그 밖에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행위는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연구가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라면 연구자는 진실성과 도덕성을 기초로 하여 본인의 학문적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여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타인의 연구 결과나 성과를 존중하는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연구진실성을 확보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하면서 연구를 수행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4. 연구윤리 관련 연구자의 역할

◆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 1) 연구자는 연구의 제안 및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의 심사 및 평가 등 연구와 관련된 일련의 행위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2)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 ②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 ③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 ④ 전문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 ⑤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 ⑥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 존중
 - ⑦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 ⑧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 ⑨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⑩ 학술지 투고, 학회 참석 등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확보

◆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

- 1) 전문성 : 연구는 전문적 식견을 필요로 하므로, 일반인들이 연구자들의 전문성을 믿고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함.
- 2) 안전성 : 연구결과로 얻어진 결과물 활용에 있어 안전해야할 뿐 아니라 인간의 삶의 질과 복지 향상, 환경 보전에 기여해야 함.
- 3) 공공성 : 연구비는 공공부문에서 나온다는 것을 명심하고, 개인의 연구를 수행하더라도 그 과정이나 결과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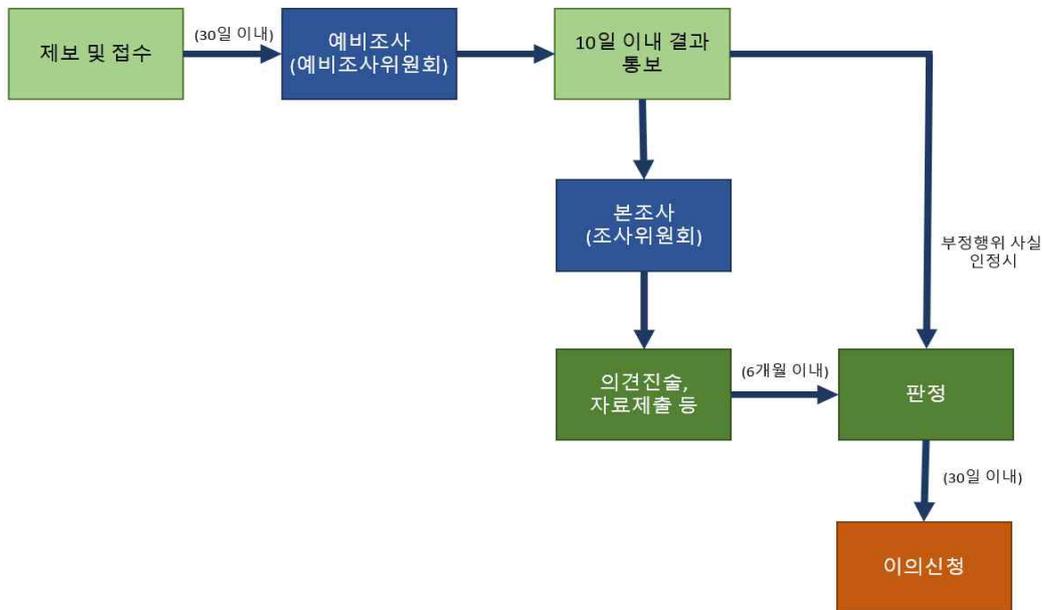
II. 연구윤리

1. 연구윤리와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

연구를 수행하는 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진실성을 확보하며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진실을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 운영

1) 관련근거 : 「연구윤리지침」, 교내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2) 처리절차



- ① 제보 및 접수 : 연구윤리위원회 담당자(교무연구처 교무연구팀, sjkm0113@sangji.ac.kr, 033-730-0695)에게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문서, e-mail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제보
- ② 예비조사 :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완료 후 10일 이내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 단,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때에는 바로 판정 가능
- ③ 본조사 : 연구윤리위원회의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본조사 착수.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 6개월 이내에 모든 조사 종료.

- ④ 판정 : 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결과를 제보자 및 피제보자에게 통보
- ⑤ 이의신청 : 조사결과 불복 시,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 ⑥ 후속조치 : 부정행위로 판정 시 총장에게 보고, 총장은 징계절차를 진행 하도록 조치, 교무연구처장에게 적의조치를 취하도록 통지

3) 주요 내용

- ① 적용대상 : 본교 교원, 직원, 연구원, 대학원생 및 기타 관련자
- ② 업무내용

- (1) 연구윤리 · 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 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 (4)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 (5) 조사 결과의 처리 및 관련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③ 연구부정행위 정의 : 교내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 연구부정행위(이하“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전 연구과정(연구의제안, 연구의 수행 및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심사·평가 행위 등)에서 발생하는 위조 및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등을 말하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05.31.)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 2. “변조”는 연구시설·장비, 연구재료 및 연구개발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개발자료 및 연구개발성과를 임의로 변형·추가·삭제함으로써 연구개발 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개정 2023.05.31)
 - 3. “표절”은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적절한 출처의 표시 없이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에 사용하는 행위 (개정 2023.05.31)
 -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기여가 없는 자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개정 2023.05.31)
 -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

- 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개정 2023.05.31)
-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개정 2023.05.31)
-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신설 2023.05.31.)

4) 유의사항

실명제보를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내용 및 증거 제출 필요

♣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노력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해서는 연구자는 연구 수행 전 과정에서 1)데이터의 위조, 변조, 표절 등의 의도적 연구부정행위 금지, 2)연구자의 무능력, 부주의, 자기기만 등의 ‘비의도적 오류’가 개입되지 않도록 연구 수행 전 과정에서 정직하고, 충실하며,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정확한 연구를 수행하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함.

- 1) 위조 및 변조, 부적절한 자료조작 방지
- 2) 표절 예방
- 3) 자기표절과 부당한 중복게재 방지

- ※ 중복게재의 기준 (대한의학저널편집인회의)
- ① 가설이 유사함.
- ② 표본의 수나 크기가 유사함.
- ③ 연구 방법이 동일하거나 비슷함.
- ④ 연구결과가 유사함.
- ⑤ 최소한 저자 1명이 공통됨.
- ⑥ 새로운 정보가 없거나 있다고 해도 매우 적음.
- ※ 학문 분야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방지

- ※ 논문 저자관련 규정 (국제의학학술편집위원회)
- ICMJE에서는 저자의 자격 요건을 아래 열거하는 4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① 연구의 구상이나 설계에 실질적인 기여, 또는 자료의 획득, 분석, 해석

- ② 연구 결과에 대한 논문 작성 또는 중요한 학술적 부분에 대한 비평적 수정
- ③ 출판되기 전 최종본에 대한 승인
- ④ 연구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에 관련된 문제를 적절히 조사하고 해결할 것을 보증하며 연구의 모든 부분에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

2. 연구윤리 인식 확산을 위한 연구윤리 교육

연구윤리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및 정보 제공을 위하여 연구윤리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연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음. 또한 연구윤리 교육자료의 개발·보급을 통하여 연구윤리 인식 확산, 연구 진실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음.

1) 교내 연구윤리 교육

- 상지대학교 학술정보원(온라인 교육)
- 교육대상 : 연구윤리위원회 위원(필수), 연구윤리 교육이 필요한 교원
- 교육강좌 : 연구·학습지원-논문작성가이드-표절예방 및 연구윤리-연구윤리 교육자료

교육강좌
표절 예방 필수코스 카피킬러 활용법
바람직한 연구 수행을 위한 표절 이해와 올바른 인용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 저자표시
설문조사시 지켜야할 연구윤리
좋은 과학논문 작성법 1~3
한국어 논문 작성과 글쓰기 윤리

2) 교외 연구윤리 교육

- 과학기술인알파캠퍼스(<https://alpha-campus.kr/>)
- 교육대상 : 전체 전임교원
- 교육강좌 : 연구책임자를 위한 연구윤리 (인문사회계·이공계), 참여연구원을 위한 연구윤리 (인문사회계·이공계) 등 필요한 강좌 선택

3. 연구성실수행 관리 및 데이터 관리의 위조 및 변조 방지를 위한 연구노트

1) 관련 근거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산학협력단「연구노트 관리규정」(담당 : 033-730-0145)

2) 연구노트 작성 방식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 제2항에 의하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노트(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과 연구개발성과를 기록한 자료)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함.
- ▶ 한국지식재산전략원(kista) 산하 연구노트확산지원본부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를 활용하시면 연구노트 작성법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연구노트확산지원본부 홈페이지 : <https://www.e-note.or.kr>

대외비(Confidential) 관리번호 :
(Serial No.)

연구노트

Research Notes

부 서 명	
연구과제명	
연구 기간	
연구책임자	
기 록 자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
Sangji University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The Laboratory Research Notebook

연구노트

이 연구노트는 아래와 같이 관리됩니다.

연 구 실 :

과 제 명 :

이 름 :

주 소 :

전 화 :

연구책임자 :

점 검 자 :

보 관 장 소 :

보 관 기 간 :

부터

까지

연구노트의 바람직한 작성방식

연구노트 관련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제17343호)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104호)

연구노트 작성 기준

- 연구개발과제별로 작성한다.
- 연구개발기관별로 작성한다.
- 연구원별로 작성 또는 하나의 연구노트에 다수 연구자가 공동 작성한다.
- 모든 연구자(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가 작성한다.

연구노트 데이터의 관리

- 연구노트에 보관이 힘든 자료(전자 파일로 작성된 다량의 결과물, 번질되기 쉬운 필름등의 원본데이터)는 별도 보관후 상호인용(Cross-reference)한다.

연구노트 조작 가능성 배제

- 영문기입, 스케치 및 도표는 지워지거나 나중에 기입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지워지지 않는 필기류로 기록한다.
- 서면연구노트에 직접 기재될 수 없는 것(예: 사진, 그래프, 데이터, 회의록, 등)은 일차 순으로 풀 등으로 부착하고 해당 날짜와 서명한다.
- 잘못된 부분을 지울 때는 수정액 등으로 지우지 말고 지워지지 않는 필기구 등으로 줄을 그어 수정하고, 중요한 수정된 경우 오기를 설명하는 주석에 밑줄을 기재하고 확인자의 형제 서명한다.
- 추거로 기입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항목 사이의 공백에 키다발계 사선을 긋는다.
- 연구노트는 한 페이지라도 덮여져서는 안된다.



| 연구노트 체크리스트 |

No.	항 목	예	아니오
1	연구노트 앞면에 노트번호와 기록자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모든 페이지에 일련번호(쪽번호)가 매겨진 묶음형식의 노트에 기록 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작성된 내용은 지워지지 않는 필기류로 기록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간너편 페이지는 없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완료된 페이지에는 공란이 없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각 기록들은 연속적으로 작성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7	모든 페이지에 기록자의 서명이 되어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8	수정된 부분은 수정 전의 내용을 확인 가능하고, 수정된 날짜와 기록자의 서명이 되어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9	정보의 기록이 읽기 쉽고, 시간 순서적이고, 완전한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0	후일에 만들어진 기록은 분리된 페이지에 기록되고 이전 기록을 포함한 관련 페이지와 상호 참조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1	부수적인 자료는 연구노트에 고정되고, 부착된 날짜와 기록자의 서명이 되어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2	연구노트에 첨부할 수 없는 데이터의 경우 따로 보관하고 관리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3	모든 기록이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확인자에 의해 통상적인 원칙으로 증명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4	연구실의 연구노트들이 적절하게 보관되고 그것들의 위치가 표시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5	연구노트는 연구자가 연구의 유효성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만큼 오랫동안 보관 되어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프로젝트 개요 |
Summary of Project

| 과 제 명 |

| 키 워 드 |

| 목 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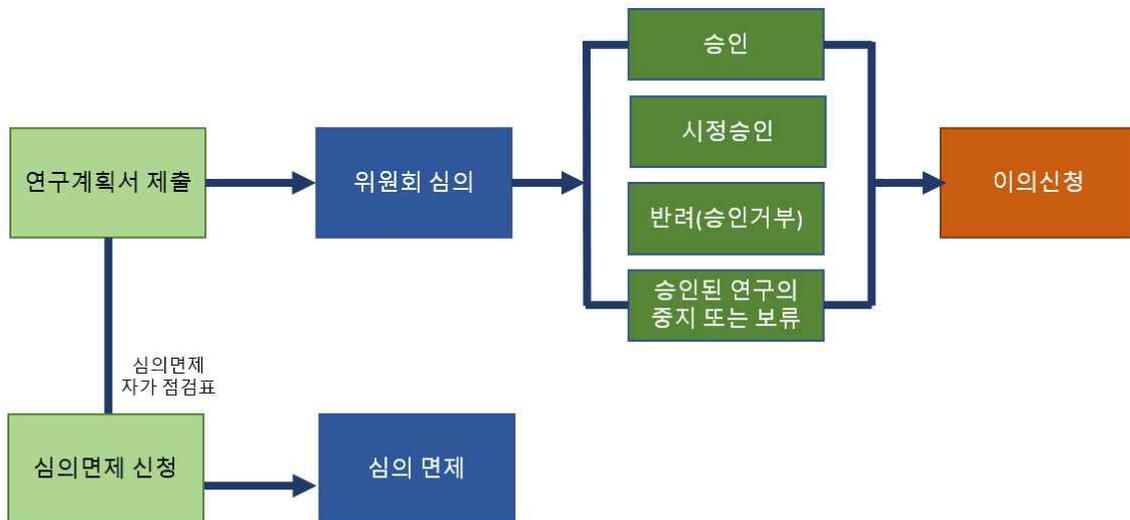
| 연구 내용 요약 |

| 기대효과 |

III. 생명윤리

본교에서 수행하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윤리적이고 과학적인 타당성을 심의하여 생명 윤리 및 권리 보호를 확보하기 위해서 <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운영

- 1) 관련근거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교내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
- 2) 처리 절차



- ① 접수방법 : 생명윤리심의위원회 담당자(교무연구처 교무연구팀,sjkm0113@sangji.ac.kr, 033-730-0695)에게 문서, e-mail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접수

3) 주요 내용

- ① 적용대상 :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및 개발 또는 그 이용에 관하여 수행하는 모든 연구
- ② 업무내용

-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2. 연구대상자 등으로부터 적절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3. 연구대상자 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4. 연구대상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5. 그 밖에 본교에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2) 위원회는 본교에서 수행 중인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감독 업무

를 수행한다.

(3) 위원회는 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한 본교 연구자 및 종사자 교육
2. 취약한 연구대상자등의 보호 대책 수립
3.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마련

4) IRB 교육 의무화

연구책임자 및 의뢰자는 IRB가 인정하는 교육 이수 후 심의 서류 제출 가능

-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교육

- 교육대상 :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위원장 포함)

- 교육방법 : 온라인 수강(아래 두가지 교육기관내 교육과정 이수)

1)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 : <https://www.kairb.org/>

2)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 <https://www.konect.or.kr/kr/gate.do>

3) 한국대학기관생명윤리위원회협회 교육 : 수시(통상 연 4~6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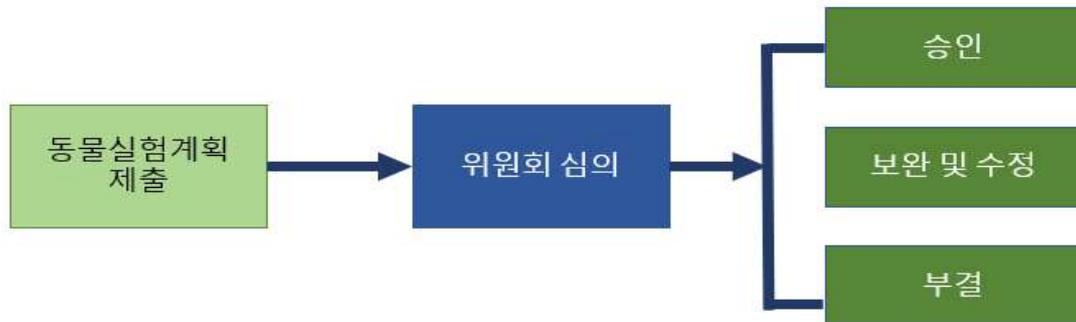
* KSIRB 주관 교육은 춘계·하계·추계·동계 컨퍼런스 및 주요 이슈 관련 교육 시행에 따라 수시교육 안내(이메일 등)

5) 제출서류 목록 : 홈페이지에서에서 확인

IV. 동물실험윤리

본교에서 수행하는 동물실험의 실험 동물 보호 및 그 윤리적 취급을 도모하기 위한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운영

- 1) 관련근거 : 「동물보호법」, 교내 「동물실험 윤리위원회 규정」
- 2) 처리절차



- ① 접수방법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담당자(교무연구처 교무연구팀, sjkm0113@sangji.ac.kr, 033-730-0695)에게 문서, e-mail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접수

3) 주요 내용

- ① 적용대상 : 본교의 동물실험시설을 이용하여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모든 구성원
- ② 업무내용

- (1) 동물실험신청 심사에 관한 사항
 - (2) 동물실험규정 및 시설 이용기준 제·개정에 관한 사항
 - (3) 시설 운영 및 관리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 (4) 시설 실사에 관한 사항
 - (5) 기타 동물실험과 관련된 제반 사항

- ③ 심의대상 : 본교의 동물실험시설을 이용하여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모든 연구, 조사 및 교육
- ④ 실험동물사용자 교육
심의 신청 전,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 연구원의 동물교육 이수 의무화
- 동물실험윤리 교육

- 교육방법 : 온라인 교육(생명과학연구윤리서재 : <https://bicstudy.org/>)
- 교육대상 : 정규 교과목 및 교내·외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동물실험을 수행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는 교원 및 해당 실험에 참여하는 학부생

참고문헌

1. 학술진흥법
<https://law.go.kr/%eb%b2%95%eb%a0%b9/%ed%95%99%ec%88%a0%ec%a7%84%ed%9d%a5%eb%b2%95>
2. 학술진흥법 시행령
<https://law.go.kr/%eb%b2%95%eb%a0%b9/%ed%95%99%ec%88%a0%ec%a7%84%ed%9d%a5%eb%b2%95%20%ec%8b%9c%ed%96%89%eb%a0%b9>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https://law.go.kr/%eb%b2%95%eb%a0%b9/%ea%b5%ad%ea%b0%80%ec%97%b0%ea%b5%ac%ea%b0%9c%eb%b0%9c%ed%98%81%ec%8b%a0%eb%b2%95/\(17343,20200609\)](https://law.go.kr/%eb%b2%95%eb%a0%b9/%ea%b5%ad%ea%b0%80%ec%97%b0%ea%b5%ac%ea%b0%9c%eb%b0%9c%ed%98%81%ec%8b%a0%eb%b2%95/(17343,20200609))
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https://law.go.kr/%eb%b2%95%eb%a0%b9/%ea%b5%ad%ea%b0%80%ec%97%b0%ea%b5%ac%ea%b0%9c%eb%b0%9c%ed%98%81%ec%8b%a0%eb%b2%95%ec%8b%9c%ed%96%89%eb%a0%b9>
5.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https://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97%b0%ea%b5%ac%ec%9c%a4%eb%a6%ac%ed%99%95%eb%b3%b4%eb%a5%bc%ec%9c%84%ed%95%9c%ec%a7%80%ec%b9%a8>
6.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길잡이
7. 데이비드 레스닉 지음, 양재섭, 구미정 옮김, 과학의 윤리:더욱 윤리적인 과학을 향하여, 한국연구재단 학술명저번역총서 서양편 381), 나남, 2016
8. 권오훈 외,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제3판,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KAMJE), 2019
9. 이호빈 외, 신진연구자를 위한 연구윤리 첫걸음, 한국연구재단, 2019
10. COPE Council (9 June 2014), What constitutes authorship? COPE Discussion Document [정준호 · 김옥주, 윤리적인 연구 출판을 위한 국제 지침, 한국연구재단(2019)]

11.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ICMJE),
Recommendations for the conduct, reporting, editing, and publication of
scholarly work in medical journals, updated January 2024, [Internet].
<https://www.icmje.org/icmje-recommendations.pdf>
12. Steneck NH, Introduction to the 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 미국
연구진실성관리국(office of research integrity, ORI), 2017
13. 엄창섭 외, 연구진실성 연구윤리 업무 매뉴얼,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2021
14. 연구자를 위한 연구사업 수행 매뉴얼, ETRI, 2017
15.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자를 위한 가이드, 연구윤리란 무엇인가?
경제인문사회연구원, 2017
16. 연세대학교 연구처 연구윤리센터,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연세대학교, 2021

연구윤리지침

초 판 1쇄 인쇄 2024년 2월 29일

초 판 1쇄 발행 2024년 2월 29일

지은이 상지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펴낸이 상지대학교

편집인 상지대학교